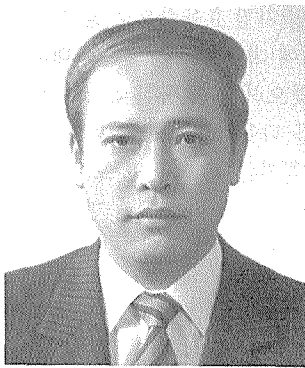


# 석유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향



李元

〈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〉

## 1. 석유산업 경쟁촉진대책 추진현황

### 가. 추진경위

- 1990. 5 『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』(위원장 : 국무총리)를 설치하여 정부규제 완화 시책 추진
  - 경제행정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산하에 『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』(위원장 : 경제기획원 차관)를 설치하고 석유산업 등 21개 산업을 대상산업으로 선정
- 1990. 8~'91. 2 걸프사태로 인한 국제석유시장 불안으로 석유산업 규제완화 추진 유보
- 1991. 3. 22 춘계세미나에서 “개방화시대의 석유정책방향” 발표

- 대외개방에 앞서 석유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
- 개방화 및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강구

- 1991. 7. 10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“석유산업의 경쟁촉진방안” 의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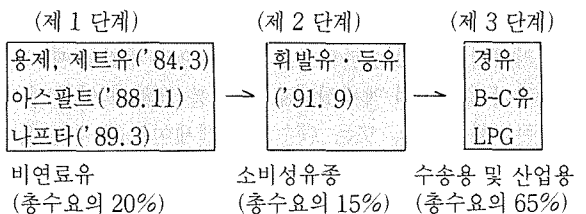
-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규제를 단계적 폐지
- 주유소간 거리제한폐지 등 석유판매업 허가기준 완화
- 석유수출입제도 및 석유정제시설 제도개선

- 1991. 11. 4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(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)

### 나. 제도개선현황

#### 1) 석유제품 가격의 단계적 자유화

-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세를 활용, 경쟁여건이 조성된 제품부터 가격을 단계적으로 자유화



#### 2) 석유유통 구조의 개선

- 석유판매업 허가기준 완화('91.11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)

- 주유소 거리제한을 종전의 반 수준으로 조정
- 이동판매소 설치근거 마련
- 정유사의 유통부문 참여제한을 단계적 허용
  - '91.9.1 휘발유, 등유가격 자유화 시점에서 3.14 조정명령 해제

3) 석유수출입제도 개선('91. 11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)

- 가격이 자유화된 석유제품의 수출입 자유화 추진
- 석유수입업체 확대
  - 석유정제업자 이외에도 석유제품 수입을 허용하여 경쟁촉진
  - 단, 석유수급안정을 위해 일정수준의 석유저장시설을 의무화
    - 석유저장시설: 전년도 수입량(전년실적이 없는 경우는 당해년도 수입계획)의 6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
    - 석유비축의무량: 전년도 판매량 또는 수입량(전년실적이 없는 경우는 당해년도계획)의 30일분 범위내

4) 석유정제업 관리제도 개선

- 석유정제시설 증설허가제의 신고제 전환('91. 11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)
  - 상업증류 시설을 제외한 개질시설, 분해시설, 탈황시설등의 증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시설고도화 및 적정규모화 유도

5) 공정거래질서 확립

- 가격표시제 의무화('91. 9. 1)
  - 가격이 자유화된 휘발유 및 등유에 대해 규격판을 활용 계시
- 상표표시제 실시('92. 4. 1)
  - 유통여건 개선에 따른 정유사간의 품질 및 가격경쟁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주유소에 상표를 표시
    - 판매 석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한계 명확화
- 공급자간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
  - 휘발유 가격 관리지침 제정·실시: 자유화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국제원유가 및 환율변동에 연동조정(경쟁허용폭 3%)
  - 석유제품 판매가격 정기보고체계 확립
  - 『주유소 상표표시제 시행지침』 제정

6)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

- '95년까지 민간비축 30일분, '96년까지 90일분(정부 60일, 민간 30일)비축 추진
  - 민간비축을 '92년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비축수준을 상향조정
  - (비축석유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 면제)

다.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

1) 긍정적 측면

- 정유사등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기반을 조성
  - 가격규제, 참입제한등을 단계적으로 완화
- 주유소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계기를 마련
  - 유통구조의 개선, 공정거래질서의 확립
- 국제 석유시장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

《국내 휘발유가격 변동추이》

	1991. 10	1991. 11	1991. 12	1992. 1
· 국제원유가(\$/B)	19.175	18.615	15.494	15.573
(Dubai, Oman평균)				
· 환율(원/\$)	753.26	757.55	761.81	767.00
· 조정율(%)	-	7.1	△2.4	-
· 소비자가격(원/ℓ)	477	507~508	497	497

2) 부정적 측면

- 국제원유가 및 환율이 상승한 시점에서 가격이 자유화되어 자유화 자체에 대한 비판 제기
  - 정유사간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등 문제 제기
- ※원유가 및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유가 조정요인
  - 원유가 10% 변동시: 7.9%수준
  - 환율 10% 변동시: 8.4%수준
- 정부관리가격에 익숙해져 있으며, 경쟁허용폭이 너무 적어 가격경쟁유도가 미흡
  - 휘발유의 경우 경쟁허용폭 3%를 내려도 1만원어치(약 20ℓ) 구입시 3백원 인하 효과에 불과

2. 석유산업여건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

가. 국제석유시장의 안정

- '92년중 국제원유가격은 OPEC(석유수출국기구)의

《주요 유종 가격 동향》

(單位: \$/B, FOB)

	'89 平均	'90 平均	'91 平均	'92. 1	'92. 2. 1-26
두 바 이	15.65	20.25	16.56	15.20	15.77
오 만	16.10	20.77	17.11	15.75	16.32
브 렌 트	18.23	23.48	20.09	18.16	18.16
W. T. I	19.64	24.36	21.52	18.83	19.03
국제원유가*	15.88	20.51	16.84	15.48	16.05

\* 두바이, 오만 평균

감산여부가 관건이나, 현 시장여건상 돌발적 사태가 없는한 걸프사태 이전 상태로 환원될 전망

- '92. 2. 12 개최된 OPEC 감시위원회의 최근 유가 하락세를 감안한 생산상한감축(2,365→2,298.2만B/D) 및 국가별 쿼터량 설정합의로 당분간 허가 격수준이 유지될 전망

○ 산유국과 소비국간 협력분위기 고조

- 산유국은 소비국의 하류부문 진출 욕구가 증대하며, 소비국의 자본과 기술로 산유국의 유전개발 참여 유도

나. 국내 석유시장의 국제화

○ 1988년 이후 국내 석유소비는 총에너지소비 증가율 11.1%에 비해 훨씬 높은 년평균 19.1% 증가세 실현

- '90년 현재 총석유소비량 세계 11위, 석유수입량 세계 6위 수준

○ 국민소득 수준향상 및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석유수요의 경질화 및 저유황화 추세 지속

○ 석유소비 증가 및 수요구조 변화로 인해 석유제품 수출입 규모가 확대

	1988	1989	1990	1991	1992(전망)
· 석유소비량 (백만배럴)	251	287	356	423	503
· 소비증가율 (%)	19.0	14.6	24.1	18.7	18.6

《수요구조변화 추이》

	'81	'85	'90	'91	'92(전망)
· 경질유비중 (%)	46.5	60.5	68.1	68.6	68.1
· 저유황경유 공급비중 (%)	-	63.8	81.8	83.1	85.9
· 저유황B-C油 공급비중 (%)	-	49.4	65.5	66.6	70.1

《석유제품 수입규모 추이》

	1988	1989	1990	1991	1992(전망)
· 제품수입(백만B)	41.9	49.3	101.3	110.3	111.7
(내수증비중, %)	(16.7)	(17.2)	(28.4)	(26.1)	(22.2)

○ 자본자유화 조치 추진으로 인해 석유정제업등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가능

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석유산업의 경쟁촉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되, 파생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  
- 석유가격 전면자유화, 주유소거리제한 전면철폐 ('93.11) 등  
- 비축능력 제고, 공정거래질서 정착등 보완조치

3. '92 석유정책방향

가. 석유산업의 경쟁촉진

○ 석유가격 경쟁허용폭 확대: 3%→5%(세전공장도 및 소비자 판매가격)

- 시행시기: 상표표시제 시행('92.4.1)과 동시 실시 검토

- 주유소 상표표시제 시행 : 1992. 4. 1부터
  - 『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('92. 1. 28) 및 『주유소 상표표시제 시행지침』에 의거하여 1992. 7. 1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조치 시행
- 석유가격의 전면 자유화
  - 정유사 미지급금(1991년 3,274억원, 잠정)에 대한 조치전망이 확실하고 국제원유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국내유가구조를 개편하여 자유화 추진
- 가격이 자유화된 석유제품의 수출입자유화 추진
  - 휘발유, 등유 등 6개 유종에 대해서 수출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(석유사업법시행규칙 개정중)
- 석유정제업 신규참여는 국내 정유사가 최근 신증설을 통해 경쟁력있는 규모가 된 만큼 석유가격 및 수출입 전면자유화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허용 검토

**나. 석유산업의 건전 육성**

- 1991원유가 및 환율상승에 따른 정유사 미지급금의 해소
  - 1992년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상계 조치하여 정유사의 자금부담을 완화

- 석유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강구
  -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투자세액 공제 및 도입기자재 관세 면제

**다.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**

- 정부비축 확대를 위한 7개 석유비축기지 건설 적극 추진
  - 1996년까지 정부비축 60일분 확보(1992. 2월 현재 34일분 수준)
- 비축유의 경제적 운용방안 강구
  - 국내 석유수급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비축유 대여
- 산유국과의 공동비축 방안 검토

**라. 석유소비절약**

- 내수용 석유수입증가율을 19.6%(예상)에서 10~12%로 감소
  - 공공기관 차량운행 10부제 실시등 분야별 석유소비절감대책 추진
- 휘발유등 소비성 유종의 소비억제를 위해 적정수준의 가격 책정

《정유사 경영실적》

		유 공	호 유	경 인	쌍 용	극 등	計
매 출 액 (억 원)	1989	25,449	20,157	4,947	6,408	4,125	61,081
	1990	31,849	24,950	6,116	8,217	6,653	77,785
	1991	40,201	27,083	7,649	-	-	-
세 후순이익 (억 원)	1989	657	266	70	315	21	1,329
	1990	313	411	74	259	△1,167	△110
	1991	245	466	43	-	-	-
매 당 율 (%)	1989	16	9	6	16	8(우선주)	-
	1990	14	5	6	16	-	-
	1991	12	6.6	5	-	-	-

**피땀흘려 이룬경제 과소비로 무너진다.**